

[별지 제21호서식]

[] 재취업
[] 재퇴직 신고서

※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
	자택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[] 에 [] 아니요
	주소		
	상이연금증서번호		
	사유 [] 재취업(재임용) [] 재퇴직		

신고 내용	재취업· 재퇴직	구분 [] 공무원 [] 사립학교교직원	재취업·재퇴직 연월일
		기관명	직급·직책
		합산 신청 여부(공무원 등 재직/퇴직 기관에서의 신청 여부) [] 신청했음 [] 신청하지 않았음	근무부서 전화번호

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30조에 따라 재취업·재퇴직 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30조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.

년 월 일

소속 기관명

직인

담당부서명:

담당자 성명:

전화번호: () -

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

첨부서류	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(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1. 신고인의 상이연금증서번호란에는 연금증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으십시오.
 - 2. 신고내용의 재취업·재퇴직의 재취업·재퇴직 연월일란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날짜를 적으십시오.
 - 가. 재취업(재임용)의 경우: 상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(취임)된 날
 - 나. 재퇴직의 경우: 상이연금 수급자가 재임용된 기관에서 다시 퇴직(퇴임)된 날
- ※ 신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,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.

처리절차

